

● 규 약

제정 2007. 4. 10.
개정 2008. 2. 11.
개정 2010. 1. 21.
개정 2012. 12. 26.
개정 2014. 5. 15.
개정 2016. 1. 12.
개정 2016. 12. 27.
개정 2018. 9. 20.
개정 2019. 9. 24.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 2019. 10. 11.
전부개정 2022. 8. 17.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 2022. 8. 22.

제 1 장 총 칙

제 1 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규정에 따라 설립되며, 그 명칭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GyeongSang Buk-Do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약칭 'GBSAD')라 한다.

제 2 조(목적)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가맹 경기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경상북도 장애인의 자긍심을 높여 체육·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도청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경북도내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도내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가맹단체와 시·군 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3. 장애인생활체육 교실, 지역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지원·대회 개최·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전개
4. 시·도 및 해외도시 간의 장애인체육 교류
5. 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6. 지역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축진
7. 지역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8. 장애인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9.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훈련 및 참가
10.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
11. 특수학교·통합학급의 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과 통합체육수업 보급
12. 지역 장애인체육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운영
13.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행
14. 지역의 장애인 체육정책 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자문
15.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조직) ①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종목별 경기단체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는 본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정가맹단체, 준가맹단체, 인정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회에 가맹하고자 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5조에 따라 중앙 가맹단체로부터 우선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 가맹단체가 없는 경우, 본회가 가맹승인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단체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가맹단체’는 정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2. ‘준가맹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가맹단체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④ 시·군 장애인체육회는 본회 지회로 하며, 본회의 정가맹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⑤ 제2항에 따라 중앙 가맹단체가 없어 본회로부터 가맹승인을 받은 단체는 추후 중앙 가맹단체를 결성할 경우 본회 지회로 가맹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가맹단체의 권리) 가맹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2.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제 7 조(가맹단체의 의무) 가맹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규약·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가맹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각종 규정의 변동이 발생한 때마다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가맹) 본회 가맹단체의 가맹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9 조(탈퇴) ① 정가맹한 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에 정가맹한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이사회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써 탈퇴하게 하고, 준가맹단체 및 인정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하게 한다.

③ 가맹단체의 가맹, 탈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0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중앙가맹단체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본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가맹단체장의 결위 또는 사고
 4. 국제체육기구와의 분쟁
 5. 가맹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6.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7. 가맹단체 평가에 따라 부진단체로 3회 지정 시
 8. 경기력향상을 위해 본회의 직접 육성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정가맹단체는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 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가맹단체운영규정' 제35조의2에 따라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관리단체의 지정 전 종목단체에게 관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해당 중앙 가맹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약간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이사
3. 감 사 : 2인 이내

② 제1항 제2호의 부회장 중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4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 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임된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⑦ 임원의 임기 제한에 있어 보선된 임원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장은 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되, 부회장 중에서 1인을 상임부회장으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하고,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장,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담당 국장,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부회장의 선임에 대하여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은 임원에 피선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총회를 구성하지 못해 이사회가 총회를 대신할 경우 선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사임) 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6조에 해당하는 때
2. 제1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의 경우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3. 정가맹단체 및 시·군장애인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⑥ 임원이 본회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⑦ 임원이 본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 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⑧ 가맹단체 또는 장애인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회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 직무도 정지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임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7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18조(구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정 가맹단체의 장 각 1명
2. 시군장애인체육회의 장 각 1명

② 해당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단체의 장이 총회 5일 전에 본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가맹단체의 가맹, 제명 및 강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제15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소집은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국가적인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21조(의장)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회장은 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장은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24조(임원의 해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 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사무처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6.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시·군지회 설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② 당연직 이사 중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담당 국장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이사회에서만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는 제26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의 기피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출석이사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각종위원회

제31조(위원회설치) 본회 제4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위원회
2. 전문체육위원회
3. 상벌위원회
4. 인사위원회
5. 실업팀운영위원회
6. 선수위원회
7.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제32조(규정) ①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해당위원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회의 명칭 및 조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따로 정한다.

제 7 장 가맹단체

제33조(조직 및 구성) ① 본회 회원인 가맹단체는 시군 가맹단체로 조직한다.

② 가맹단체의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다만, 총회가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

제34조(임원승인 및 취소) ① 가맹단체의 임원은 중앙 가맹단체장의 승인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승인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철회할 수 있다.

제35조(규정) 가맹단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시·군 지회

제36조(조직 및 구성) ① 본회의 사업목적 수행과 시·군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하여 시·군에 지회를 두고, 시·군 지회는 시·군 가맹단체를 회원으로 둔다.

② 시·군 지회장은 해당 시·군의 시장, 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중 1인은 시·군 교육장이 되고 기타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시·군 지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임원의 승인 및 취소) ① 시·군 지회의 임원(시장·군수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예외로 한다)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본회는 시·군 지회 임원 승인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 9 장 자 산 및 회 계

제38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및 회비
3. 사업수입금 및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5.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원금, 기부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

제39조(자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 금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0조(재산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

제41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2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재산목록, 사업보고서 및 재산증감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기금 및 적립금) ①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4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회계감사) 본회는 가맹단체 및 시·군 지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제 10 장 사 무 처

제46조(사무처) ①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7조(사무처장의 직무) ① 사무처장은 상근하며,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전반을 관장한다.

② 직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산하지부 포함) 및 시·군 지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8조(사무처 직제와 규정)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49조(경영공시) 본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

제50조(지원단) ① 본회는 장애인체육진흥의 다각적인 후원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에는 단장을 비롯한 필요 임원을 두며 기타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한다.

제51조(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 본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중앙가맹단체를 포함하여 가맹단체 및 시·군 지회 구성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3조에 의거 설치한 법제상벌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칩

제52조(표창 및 징계) ① 본회는 장애인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53조(규약개정) ① 본회 규약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의 변경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시행세칙 등)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결정·시행한다.

제55조(준용) 이 규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칩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는 대의원총회 구성 전까지 이사회가 대의원총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사회가 행한 이전의 모든 행위는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약 제12조 제4항과 관련하여, 제5기 임원 임기의 경우는 제4기 임원의 임기 만료 익일부터 2027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3 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주요 용어인 '시·군지부'를 '시·군지회'로, '경기력향상 위원회'를 '전문체육위원회'로, '상벌·조정위원회'를 '상벌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해당 용어도 규약 승인을 받는 날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

② 관련 규정은 인사규정,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규정, 시·군지부 운영규정, 경기력향상 위원회 운영규정, 상벌·조정위원회 규정이다

③ 생활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약 제33조 제1호"를 "규약 제31조"로 한다.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규약 제40조"를 "규약 제47조"로 한다.